

의안번호	2208175
의 퇴 인	김교홍의원
회 답 일	2025.3.21.
추계번호	25D0873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제6항 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유자시설 ¹⁾ 등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제6항 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2]에 따른 노유자시설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노인 관련 시설: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), 노인보호전문기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- 나. 아동 관련 시설: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)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- 다. 장애인 관련 시설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(장애인 심부름센터, 한국수어통역센터, 점자도서관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)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- 라.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: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재활시설(생산물판매시설은 제외한다), 정신요양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- 마. 노숙인 관련 시설: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(노숙인일시보호시설, 노숙인자활시설, 노숙인재활시설,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한다),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- 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

2. 상세 사유

□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(안 제13조제6항 신설)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유자시설, 의료시설 등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,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－ 현행법은 화재안전기준 등이 강화된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, 예외적으로 노유자시설, 의료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 - － 현행법에서는 노유자시설 등의 면적, 시설의 세부종류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
- 다만, 노유자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 등의 강화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, 해당 소방시설의 기 설치 비율, 소방시설 종류별 설치 수량, 소방시설별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, 소방청의 「2025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자료」에 따르면, 2024년 말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은 77,156개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